

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

□ 지원대상 및 내용

구분	차상위 이하	차상위 초과
가구소득	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	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연령	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*	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**
근로기준	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	월 50만원 초과 ~ 월 250만원 이하
지원액	매월 30만원	매월 10만원

*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**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(근로소득공제금)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 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 유지형 제외)
-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

□ 가입 및 유지 기준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	2,392,013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가입기준 (소득상한)*	2,392,013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	5,025,353	5,025,353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
* 가입기준(소득상한)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** 유지기준(소득상한): 청년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□ 해지요건

구 분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	만기 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	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
	중도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·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,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	
환수	만기 -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* 추후 재가입 가능
	중도 -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-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시 - 본인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

□ 유의사항

○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*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*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[참고]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

1월	'24.12.24(화)~'25.1.22(수)	7월	6.24(화)~7.22(화)
2월	1.23(목)~2.24(월)	8월	7.23(수)~8.22(금)
3월	2.25(화)~3.24(월)	9월	8.23(토)~9.22(월)
4월	3.25(화)~4.22(화)	10월	9.23(화)~10.22(수)
5월	4.23(수)~5.22(목)	11월	10.23(목)~11.24(월)
6월	5.23(금)~6.23(월)	12월	11.25(화)~12.22(월)

○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
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·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·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,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
◆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

- 남동구청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(☎ 032-453-2584)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(☎ 1522-3690)

◆ 관련 사이트

- 자산형성포털 (<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/>)